교원 인사관리 준칙

제정 1998. 05. 18.
제27차 개정 2020. 03. 16.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교원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구체화하여 교원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신규임용

제2조(지원자격)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시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임용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예정인 사람.
2. 박사학위 논문과 최근 4년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I, A&HCI, SCI-E, SSCI, SCOPUS)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의 실적이 400% 이상인 사람. 단, 교육중점교원 신규임용 지원자는 300%이상인 사람.

② 전임교원 중 한의학과 임상교원의 지원자격과 논문실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예능계 교원의 신규임용 지원자격은 1항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조 개정 2000.5.30. 2014.12.15. 2017.9.7. 2019.8.14.)

제2조의2(직급 및 경력환산)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에 따른 직급은 전임교원 특별채용 직급정급 기준표(별표1)에 따라 정하며, 직급부여를 위한 경력환산 기준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9.8.14.)

제3조(채용방법 및 제출서류)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공고는 15일 이상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항 개정 2002.4.11, 2004.9.21., 2009.10.9. 2019.8.14.)

② 전임교원 임용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임용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교육 및 연구계획서
4. 각 학위별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5. 최근 4년간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물(산학협력실적 포함)
6. 석·박사 학위논문
7.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8. 자격·면허 관련 증서 사본(해당 분야에 한함)
9. 외국인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소속국 대사관 발행)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항 신설 2019.8.14.)
③ 심사방법은 기초 및 전공 심사, 공개발표 심사, 면접심사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한다. (항 신설 2002.4.11, 2005.10.24.)(개정 2014.12.15. 2019.8.14)
④ 기초 및 전공 심사는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여부와 학문적 우수성 등의 심사를 한다. (항 변경 2002.4.11, 2005.10.24.)(개정 2014.12.15. 2019.8.14)
⑤ 공개발표 심사는 지원자의 연구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를 한다. (항 변경 2002.4.11, 2005.10.24, 2008.5.13.)(개정 2014.12.15 2019.8.14)
⑥ 면접심사는 기초 및 전공 심사, 공개발표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를 한다. (항 변경 2002.4.11) (개정 2005.10.24. 2014.12.15)
(조 개정 2000.5.30. 2019.8.14)

제1절 기초 및 전공 심사(절 개정 2014.12.15. 2019.8.14.)

제4조(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의 임명) ① 기초 및 전공심사 위원회는 해당 주임교수(학과장)가 추천하는 전공교원(내부위원) 2명 및 교육연구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4.11. 2005.10.24. 2019.8.14)
② 위원장은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0.24. 2019.8.14)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전공(학과)교원 수의 부족 또는 공개발표 심사위원회와의 중복 등으로 인해 전공(학과)추천의 심사위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전공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0.24. 2014.12.15)
④ 삭제 (2002.4.11)
⑤ 외부위원은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 또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05.10.24. 2019.8.14)
⑥ 임명(위촉)된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금지한다. (개정 2005.10.24) (조 개정 2000.5.30. 2019.8.14.)
⑦ 지원자와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또는 특수관계(석·박사 지도교수, 공동연구자)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항 신설 2019.8.14.)

제5조(기초 및 전공 심사 방법) ① 기초 및 전공 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각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한다. (개정 2005.10.24. 2014.12.15. 2019.8.14)
② 해당 전공(학과)에서는 전공의 일치성 및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교원충원요구서"에 세부전공 및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교무연구팀에 사전제출하며, 평가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5.10.24., 2018.9.18)
③ (삭제 2000.10.24)
④ 기초 및 전공 심사는 100점을 총평정점으로 하여, 기초심사 30점과 전공 심

사 70점으로 한다. (신설 2005.10.24) (개정 2008.5.13. 2014.12.15. 2018.9.18. 2019.8.14)
(조 개정 2000.5.30. 2014.12.15. 2019.8.14)

제6조(기초심사평가기준) ① 전공영역의 일치성 및 적합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평가한다. (개정 2000.10.24., 2005.10.24) (각호 개정 2008.5.13. 2014.12.15. 2018.9.18)

1. 전공적격 여부 - 가·부
2. 학위 전공 일치(15점) - A:15점, B:12점, C:9점, D:6점
3. 교육 및 연구경력 전공일치(10점) - A:10점, B:8점, C:6점, D:4점
4. 학업성적(5점) - A:5점, B:4점, C:3점, D:2점

② 국외 석사학위 취득 시 학위논문이 아닌 시험(성적)으로 통과하여 취득한 자,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자는 학위기 상의 전공영역 또는 성적증명서 상의 전공분야 및 이수교과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신설 2000.10.24)(개정 2014.12.15)

③ 기초심사 평가기준 중 "부" 및 "D"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개정 2008.5.13)

④ 기초심사 평가기준 중 전공적격 여부를 "부"로 평가한 경우에 해당심사위원은 전공심사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10.24) (개정 2008.5.13. 2014.12.15. 2019.8.14)

⑤ 기초심사 결과 전공적격 여부에 대하여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부'로 평가된 지원자는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항 신설 2019.8.14.)
(조 개정 2000.5.30.)

제7조(전공심사 평가기준) ① 전공심사의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평가하되, 전체 연구실적물의 양적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부가된 전공심사(연구실적물) 세부평가 내역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5.10.24, 2008.5.13, 2009.10.9. 2014.12.15)(각호 개정 2014.12.15. 2018.9.18. 2019.8.14)

② 박사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4년이내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평가한다. (개정 2014.12.15. 2019.8.14)

(조 개정 2000.5.30, 2002.4.11., 2005.10.24., 2019.8.14)
(전문개정 2012.11.5)

제7조의2(산학협력 평가기준)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4년이내의 산학연 위탁·공동연구 과제 및 연구비 수혜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2.11.5. 2018.9.18)

1. A : 5점
2. B : 4점
3. C : 3점
4. D : 2점
5. E : 0점 (개정 2012.11.5. 2018.9.18)

(조 신설 2008.5.13) (조 삭제 2014.12.15.)(조 개정 2018.9.18)

제8조(서류관리 및 제출) (조 개정 2000.5.30) (조 삭제 2005.10.24)

제9조(최종학위논문 평가기준) 지원자가 제출한 박사학위논문(박사학위 미소지자는 지원자가 지정한 대표 연구실적물 또는 작품)의 학문적 우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A : 20점 2. B : 16점 3. C : 12점 4. D : 8점

(조 신설 2005.10.24) (조 삭제 2014.12.15.) (개정 2018.9.18., 2019.8.14)

제10조(학위논문 외 연구실적의 평가기준) ①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04.9.21) (조삭제 2014.12.15.) (개정 2018.9.18)

1. A : 20점 2. B : 16점 3. C : 12점 4. D : 8점

(개정 2002.4.11) (호 삭제 2005.10.24.) (개정 2012.11.5. 2018.9.18. 2019.8.14.)

② (개정 2004.9.21. 2018.9.18.) (항삭제 2019.8.14.)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18.9.18)

제11조(기초 및 전공심사 진행 및 절차) ① 교육연구처장은 전임교원 초빙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초 및 전공심사 기간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5.10.24. 2014.12.15. 2019.8.14)

② 외부위원이 심사할 경우에는 교무연구팀에서 해당 외부위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심사 기간 내에 본교로 초청하여 심사토록 한다. (개정 2005.10.24. 2018.9.18)

③ 삭제 (2000.10.24)

④ (개정 2000.10.24, 2002.4.11, 2003.3.19) (삭제 2005.10.24)

⑤ 기초 및 전공 심사 시 모든 진행 및 관리는 교무연구팀에서 주관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자료가 일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심사 완료된 심사평가표는 서명 날인 후 개별적으로 심사 당일 교무연구팀에 제출한다. (개정 2005.10.24. 2014.12.15. 2018.9.18. 2019.8.14)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14.12.15. 2019.8.14)

제12조(공개발표심사대상자 선발) 기초 및 전공 심사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점수를 교무연구팀에서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에 따라 모집인원의 6배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공개발표 심사대상자로 선발한다. (개정 2006.4.3, 2014.12.15., 2017.3.21. 2018.9.18. 2019.8.14)

(조 신설 2005.10.24. 2019.8.14)

제2절 공개발표 심사(절 개정 2014.12.15.)

제13조(공개발표심사위원의 임명) ① 공개발표 심사위원회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학과장)가 추천한 전공교원(내부위원) 2명, 교육연구처장이 추천한 외부위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초빙 학부(과)의 소속 교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공교원을 최대 4명까지 임명할 수 있으며, 전공

교원의 위원수가 3명을 초과하면 외부위원은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4.11, 2005.10.24. 2014.12.15. 2019.8.14)

② 위원장은 공개발표 심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0.24. 2014.12.15)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전공(학과)교원 수의 부족 또는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 회와의 중복 등으로 인해 전공(학과)추천의 심사위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전공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0.24. 2014.12.15. 2019.8.14)

④ 삭제 (2002.4.11)

⑤ 지원자와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이내, 인척 4촌이내) 또는 특수관계(석·박사 지도교수, 공동연구자)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5.10.24. 2019.8.14)

⑥ 임명(위촉)된 공개발표 심사 위원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금지한다. (개정 2005.10.24. 2014.12.15)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14.12.15)

제14조(공개발표심사 방법) ① 공개발표 심사는 공개발표심사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한다. (개정 2003.3.4, 2005.10.24. 2014.12.15. 2019.8.14)

② 공개발표 주제는 지원자 연구실적물에서 지원자가 택일하여 발표하며, 이에 따른 세부 진행계획은 해당 전공(학과)에서 수립하여 교무연구팀에 사전 제출한다. 다만, 실기지도가 필요한 초빙분야의 공개발표 주제에는 실기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항 신설 2005.10.24.)(개정 2014.12.15. 2018.9.18)

③ 공개발표 심사는 총평정점을 50점으로 한다. (개정 2002.4.11, 2005.10.24, 2008.5.13. 2014.12.15)

③ 삭제 (2000.10.24)

④ 공개발표 심사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점평균을 산출하여 심사 점수로 적용한다. (항 신설 2005.10.24.) (개정 2014.12.15)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14.12.15)

제15조(서류관리 및 제출) (조 삭제 2005.10.24)

제16조(공개발표심사 평가 기준) ① 삭제 (2005.10.24)

② 공개발표 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공개발표 평가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A(탁월):10점, B(우수): 8점, C(보통): 6점, D(미흡):4점, E(매우미흡):2점

(개정 2005.10.24, 2008.5.13, 2012.11.5. 2014.12.15., 2017.6.1., 2019.8.14)

③ 공개발표 평가 시 학부(군)의 교원과 해당 전공 대학원생, 학생대표는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관을 허용한다.

④ 공개발표에 불참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항신설 2019.8.14)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08.5.13. 2014.12.15. 2019.8.14)

제17조(공개발표심사 진행 및 절차) ① 교육연구처장은 전임교원 초빙 일정에 따

라 정해진 공개발표 심사 기간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5.10.24)
② 외부위원이 심사하는 경우에는 교무연구팀에서 해당 외부위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심사 기간내에 심사토록 한다. (개정 2005.10.24. 2018.9.18)
③ 공개발표심사 일정은 공개발표 심사위원회의 세부계획에 의거 교무연구팀에서 해당 지원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05.10.24. 2014.12.15. 2018.9.18. 2019.8.14.)
④ 삭제 (2000.10.24)
⑤ (개정 2000.10.24) (항 삭제 2005.10.24)
⑥ (항 삭제 2005.10.24)
⑦ 분배된 심사자료는 위원장이 관리하고 심사 자료는 일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심사 종료 후 관련 자료 일체를 교무연구팀으로 반납한다. (항 신설 2005.10.24.) (개정 2018.9.18)
⑧ 완료된 심사평가표는 서명 날인 후 개별적으로 봉인하여 심사 당일 교무연구팀에 제출한다. (항 신설 2005.10.24.) (개정 2018.9.18)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14.12.15)

제18조(면접심사대상자 선발) ① 삭제 (2014.12.15)
②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점수와 공개발표심사위원회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공개발표심사점수를 교무연구팀에서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에 따라 모집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 면접심사대상자로 선발한다. (항 신설 2008.5.13.)(개정 2014.12.15. 2017.3.21. 2018.9.18. 2019.8.14)
(조 신설 2005.10.24)

제3절 면접심사

제19조(면접심사 위원의 임명)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 교육연구처장, 해당 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19.8.14)

제20조(서류관리 및 제출) (조 개정 2000.5.30) (조 삭제 2005.10.24)

제21조(면접심사 방법) 면접심사는 면접심사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각 심사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다.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19.8.14)

제22조(면접심사 평가) 면접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심사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A : 해당 사항에 충실히 부합하는 경우 - 20점
2. B : 해당 사항에 부분적으로 부합되는 경우 - 15점
3. C : 해당 사항에 관련이 희박한 경우 - 10점
(조 개정 2000.5.30., 2005.10.24)

제23조(면접심사의 진행 및 절차) ① 심사기간중 위원장이 특정 기일을 정하여 심사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② 면접심사 일정은 교무연구팀에서 해당 지원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18.9.18. 2019.8.14)
③ 면접심사위원회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점수를 교무연구팀에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수와 동일한 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한다. 다만,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점이 70점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후보자를 선발하지 못한 사유서(위원회 종합의견)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서류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6., 2017.3.21. 2018.9.18., 2019.8.14)
④ 면접심사 시 모든 진행 및 관리는 위원장이 주관한다.
⑤ 분배된 자료는 위원장이 관리하고 심사자료는 일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심사 종료 후 관련 자료 및 심사평가표는 교무연구팀에 제출한다. (항 신설 2005.10.24)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18.9.18)

제4절 공정관리위원회

제24조(공정관리위원회) ① 신규 전임교원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14.)
② 공정관리위원회는 교육부총장, 기획평가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평교수 3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된다. (개정2019.8.14., 2020.03.16.)
③ 채용과정중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총장이 판단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의견서(위원회 종합의견)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각 단계별 심사위원은 공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조 개정 2000.5.30, 2005.10.24)

제2장 승진 임용

(개정 2008.6.30., 2020.03.16.)

제25조(승진 심사시기) ① 승진임용 심사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자, 10월 1일자에 실시한다.
② 승진임용 대상자에게 업적평가 자료입력 및 추가자료 제출을 60일전에 요구한다. (개정 2008.6.30)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08.6.30.)
〔조명변경 2020.03.16.〕

제26조(승진임용 심사방법) ① 해당 승진직급별 교수업적평가규정의 기준점수 충족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일반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평정 기준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승진 및 재임용 심사평정표(별지 제4-1호 서식)를 작성하

여 최종심의 후 적격 판정을 받아야한다. 승진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9명이 각각 평정하여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 적용하며, 부교수의 승진임용은 평균 80점 이상, 교수 승진임용은 평균 85점 이상 획득하여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단, 위원이 평정 대상자일 경우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2.26, 2008.6.30, 2012. 02. 08, 2016.01.21., 2018.05.17., 2020.03.16)

②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1항의 현직급 임용 기간내의 업적평가 기준점수 미충족 대상자는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9.21, 2007.2.26, 2008.6.30., 2017.6.1., 2020.03.16.)

③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부교수, 교수 승진임용 시 박사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2012.2.8., 2017.6.1., 2020.03.16.)

1.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충족 외 박사학위 논문 200점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 SCI-E)에 게재된 연구실적물 200점 이상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04.9.21, 2008.6.30., 2017.6.1., 2020.03.16.)
2. 예능계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1항의 충족 외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별표2)에 따른 인정률을 적용하여 박사학위 논문 200점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02.1.23, 2008.6.30., 2017.6.1., 2020.03.16.)
3. 학교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공헌이 인정된 경우 (개정 2000.10.24)

(조 개정 2000.5.30., 2005.10.24.)
〔조명변경 2020.03.16.〕

제27조(승진임용 시 연구실적 평가)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 SCI-E)에 게재한 논문의 평가는 생략한다. (개정 2004.9.21, 2017.6.1)

② 삭제 (2017.6.1)

③ 삭제 (2017.6.1)

(조 개정 2000.5.30, 2005.10.24)

제3장 전임교원의 재임용

(개정 2017.6.1. 2019.8.14)

제28조(재임용 시기 및 절차) ① 전임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단, 임용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07.2.26., 2017.6.1 2019.8.14)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2017.6.1) (개정, 각 호신설 2007.2.26)
1. (개정 2008.6.30) 삭제 (2017.6.1)
2. 삭제 (2017.6.1)
3. (개정 2014.07.30) 삭제 (2017.6.1)
4. 삭제 (2017.6.1)
5. 삭제 (2017.6.1)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④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항 신설 2007.2.26) (개정 2017.6.1.)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6.1)

⑥ 국내외 파견 교원들 중 임용기간이 파견 기간 중에 만료되거나 만료 시점 1개월 전까지 복귀하지 못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제 3항에 의거하여 파견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기 재임용 시기로 변경하여 심사를 한다. (신설 2017.6.1)

⑦ 비정년트랙교원 임용관련 사항은 비정년트랙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6.1)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17.6.1)

제29조(재임용 심사방법) ① 해당 직급별 교수업적평가규정의 기준점수 충족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일반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평정 기준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승진 및 재임용 심사평정표(별지 제4-1호 서식)를 작성하여 최종 심의 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30., 2017.6.1., 2018.05.17., 2020.03.16.)

② 재임용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9명이 각각 평정하여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적용하며, 조교수 재임용은 평균 70점 이상, 부교수 재임용은 평균 80점 이상 획득하여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단, 위원이 평정 대상자일 경우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6.30, 2016.01.21, 2017.6.1)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시 연구실적, 근무의 충실도, 학생지도실적 및 공헌도, 교육관계법령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에 대하여 저촉 및 의견불립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의결 처리한다. (개정 2017.6.1)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17.6.1)

제4장 정년보장임용

(개정 2008.6.30., 2020.03.16.)

제30조(정년보장임용 심사시기) ① (항 삭제 2007.2.26)

② 정년보장임용 심사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자, 10월 1일자로 한다. (개정 2017.6.1., 2020.03.16.)

(조 개정 2000.5.30, 2005.10.24)

제31조(교수의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물 적용기준) ① (항 삭제 2007.2.26)

② (항 삭제 2008.6.30.) (개정 2007.2.26)

(조 개정 2000.5.30, 2005.10.24, 2008.6.30)

제32조(정년보장임용 심사방법) ① 정년보장임용 심사는 교수업적평가규정의 기준점수 충족과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최종심의 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3.16.)

② 정년보장심사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위원 9명이 각각 평정하여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 적용하며, 평균 8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단, 위원이 평정대상자일 경우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3.16.)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의하고 정년보장임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20.03.16.)

④ (항 삭제 2008.6.30)

1. (호 삭제 2008.6.30)
2. (호 삭제 2008.6.30)
3. (호 삭제 2008.6.30)
4. (호 삭제 2008.6.30)

〔조명변경 2020.03.16.〕

부칙

이 준칙은 199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199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준칙 제25조(기간제 임용심사시기)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 기간제임용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10)
이 준칙은 200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330 : 2006. 4. 3)
이 준칙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92 : 2007. 02. 26)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7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6조(승진임용 심사방법) 제1항, 제32조(정년보장임용 심사방법) 제1항 내지 2항의 규정은 2007. 4. 1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교원인사규정 별표 3과 같이 경과를 두어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605 : 2008. 5. 15)
이 준칙은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84, 2008.7.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준칙은 2009년도부터 기간제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2008년도 기간제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51, 2009.10.9)
이 준칙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84, 2012.2.8)
이 준칙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522, 2012.11.5)
이 준칙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9, 2014.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3조③항은 201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시에는 모집인원의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한다. 단, 임용후보자가 공고된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평균 140점을 초과하면 모두 임용후보자로 제청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27, 2014.07.30)
이 준칙은 2014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88, 2014.12.15)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특성화기초학부 소속 교원의 충원요구 및 신규임용절차는 타 학과(부)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부-56, 2016.01.21)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준칙은 2016년도 기간제 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부터 적용하되, 2016.03.01.자 기간제임용 교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20, 2017.03.22)
이 준칙은 2017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53, 2017.06.13)
이 준칙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무부-713, 2017.09.08)
이 준칙은 2017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무부- , 2017.09.20)
이 준칙은 2017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71, 2018.05.17)
이 준칙은 2018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무연구팀-814, 2018.09.18)
이 준칙은 2018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무연구팀-696 , 2019.08.14)
이 준칙은 2019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무연구팀-232, 2020.03.16)
이 준칙은 2020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전임교원 특별채용 직급정급 기준표

구 분	정 급 기 준
교 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교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이 교수업적평가규정(별표6)에 제시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사람 ②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연수(임상교원의 경우 임상경력)가 총 13년 이상인 사람. 단, 예·체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연수가 총 16년 이상인 사람 ③「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교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신규임용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공통사항	각 직급별 '총장이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직급을 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1.5. 2014.12.15. 2018.9.11. 2019.8.14.)

기초 및 전공 심사 평가표

〔 대학 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

<table>
<tr><th colspan="2">심사항목</th><th colspan="2">세부심사기준 및 기재사항</th><th>배점</th><th colspan="6">평 가</th><th>심사점수</th></tr>
<tr><td rowspan="4">기초심사
(임용분야 전공영역의 일치 여부)</td><td>전공적격 여부</td><td colspan="2">- 지원자 전공이 초빙분야와의 적격여부를 가·부로 평가</td><td></td><td colspan="6">가 · 부</td><td></td></tr>
<tr><td>학위전공 일치
(학사 20%, 석사 30%, 박사 50% 적용)</td><td colspan="2">- 학위증명서 및 논문을 확인하여 전공명을 기재
- 유사 전공은 학위별 적용비율을 반영하여 평가
►학사전공 :
►석사전공 :
►박사전공 :</td><td>15</td><td>A (100%)</td><td>B (80% 이상)</td><td>C (50% 이상)</td><td>D (50% 미만)</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15</td><td>12</td><td>9</td><td>6</td><td></td><td></td><td></td></tr>
<tr><td>교육 및 연구경력(현장실무경력 포함) 전공 일치</td><td colspan="2">- 초빙 학과(전공)의 “충원요구서”에 기재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
- 지원서 경력 중 가장 유리한 1개 경력을 기준으로 인정하여 평가
- 근무기관, 근무년수, 전공일치 등을 감안하여 평가
►경력인정기관(근무기관, 근무년수, 담당업무) :</td><td>10</td><td>A (매우높음)</td><td>B (높음)</td><td>C (보통)</td><td>D (미흡)</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10</td><td>8</td><td>6</td><td>4</td><td></td><td></td><td></td></tr>
<tr><td></td><td>학업성적</td><td colspan="2">- 학사. 석사. 박사 성적증명서를 확인하여 종합적인 학업성적을 평가</td><td>5</td><td>A (탁월)</td><td>B (우수)</td><td>C (보통)</td><td>D (미흡)</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5</td><td>4</td><td>3</td><td>2</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전공심사
(연구실적물 평가)</td><td rowspan="2">전 체 연구실적물
(최근 4년간 연구실적량)</td><td colspan="2">등급 / 내 역 / 점수
A 평가집계점수 120점 이상 25점
B 평가집계점수 105점 이상~120점 미만 21점
C 평가집계점수 90점 이상~105점 미만 17점
D 평가집계점수 75점 이상~ 90점 미만 13점
E 평가집계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9점
F 평가집계점수 60점 미만 5점</td><td>25</td><td colspan="6">〔전공심사(연구실적물) 세부평가내역〕에 의거 평가집계점수 기재
평가집계점수</td><td></td></tr>
<tr><td></td><td></td><td></td><td>A</td><td>B</td><td>C</td><td>D</td><td>E</td><td>F</td><td></td></tr>
<tr><td></td><td></td><td></td><td>25</td><td>21</td><td>17</td><td>13</td><td>9</td><td>5</td><td></td></tr>
<tr><td>산학협력</td><td colspan="2">- 최근 4년간 산학연 위탁·공동연구과제 및 연구비 수혜 실적</td><td>5</td><td>A (탁월)</td><td>B (우수)</td><td>C (보통)</td><td>D (미흡)</td><td>E (없음)</td><td></td><td></td></tr>
<tr><td></td><td></td><td></td><td>5</td><td>4</td><td>3</td><td>2</td><td>0</td><td></td><td></td></tr>
<tr><td rowspan="2">연구실적
(학문적 우수성)</td><td>박사학위 논문</td><td>►제목 :
►지도교수 :</td><td>20</td><td>A (탁월)</td><td>B (우수)</td><td>C (보통)</td><td>D (미흡)</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20</td><td>16</td><td>12</td><td>8</td><td></td><td></td><td></td></tr>
<tr><td></td><td>연구실적</td><td>- 박사학위논문(지정 대표 연구실적물 또는 작품) 외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전공분야에 대한 기여도 평가</td><td>20</td><td>A (탁월)</td><td>B (우수)</td><td>C (보통)</td><td>D (미흡)</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20</td><td>16</td><td>12</td><td>8</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계</td><td>100</td><td colspan="6"></td><td></td></tr>
</table>

※ ① 기초심사의 전공적격여부를 “보”로 평가하였을 경우와 학위전공 일치, 교육 및 연구경력을 “D”로 평가하였을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별도의 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기초심사의 전공적격여부를 “보”로 평가하였을 때는 전공심사(연구실적물평가)를 평가할 수 없음.
③ 박사학위 미소자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란에 ‘지정 대표 연구실적물 또는 작품’을 표기하고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성 명 : (인)

전공심사(연구실적물) 세부평가내역

(개정 2014.12.15. 2016.01.21. 2018.9.11. 2019.8.14.)

▶ 공통적용

<table>
<tr><th>구분</th><th>항목
번호</th><th>업적내용</th><th>가중치</th><th>평가점수</th></tr>
<tr><td rowspan="3">저서
(2.10)</td><td>2.11</td><td>국제 학술저서</td><td>25</td><td></td></tr>
<tr><td>2.12</td><td>국내 전문서적</td><td>10</td><td></td></tr>
<tr><td>2.13</td><td>전공관련 번역서 및 편저서</td><td>5</td><td></td></tr>
<tr><td rowspan="6">논문
및
특허
(2.20)</td><td rowspan="2">2.21</td><td>국제 저명학술지</td><td><table><tr><th>Impact Factor</th><th>가중치</th></tr><tr><td>10≦impact factor</td><td>50</td></tr><tr><td>5≦impact factor〈10</td><td>40</td></tr><tr><td>1≦impact factor〈5</td><td>30</td></tr><tr><td>1〉impact factor</td><td>20</td></tr></table></td><td></td></tr>
<tr><td>국제 특허</td><td>10</td><td></td></tr>
<tr><td rowspan="2">2.22</td><td>국내 전문학술지</td><td rowspan="2">10</td><td></td></tr>
<tr><td>국내 특허</td><td></td></tr>
<tr><td rowspan="2">2.23</td><td>국제 전문학술지</td><td><table><tr><th>Impact Factor</th><th>가중치</th></tr><tr><td>10≦impact factor</td><td>25</td></tr><tr><td>5≦impact factor〈10</td><td>20</td></tr><tr><td>1≦impact factor〈5</td><td>15</td></tr><tr><td>1〉impact factor</td><td>10</td></tr></table></td><td></td></tr>
<tr><td>국제 일반학술지</td><td>4</td><td></td></tr>
<tr><td>2.24</td><td>박사학위논문</td><td>10</td><td></td></tr>
<tr><td colspan="4">계</td><td></td></tr>
</table>

구분	항목번호	업적내용	인정범위
저서 (2.10)	2.11	국제 학술저서	▪ ISBN 코드가 부여된 실적물 ▪ 전공분야 저서로서 기존 서적(본인 저서 포함)의 30%이상이 개정된 실적물만 인정
	2.12	국내 전문서적	▪ ISBN 코드 또는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가 부여된 실적물 ▪ 전공분야 저서로서 기존 서적(본인 저서 포함)의 30%이상이 개정된 실적물만 인정 ▪ 전문적 항목을 심도 있게 저술한 서적 ▪ 시집, 소설집, 평론집, 드라마대본, 서예집, 음반 등 포함
	2.13	전공관련 번역서 및 편저서	▪ 외국의 전공분야 학술저서를 번역한 저서 ▪ 국내 전공분야 학술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저서 ▪ 여러 사람의 논문 또는 전공 관련 문예창작물 등을 묶어 편집한 출판물
논문 및 특허 (2.20)	2.21	국제 저명학술지	A&HCI, SSCI, S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
		국제 특허	등록된 것에 한함
	2.22	국내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내 특허	등록된 것에 한함
	2.23	국제 전문학술지	【SCOPUS 인정 기준】 - 정규논문으로 인정되는 Document Type 4종 : Article, Review, Erratum(조건부인정), Book Chapter (조건부인정) ※ 1) Erratum :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논문으로 기 등록되어있으면,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 2) Book Chapter : SCOPUS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경우 정규 논문으로 인정 【SCOPUS 불인정 기준】 - 다음 7가지 Document Type은 불인정 : Editorial, Letter, Note,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
		국제 일반학술지	▪ 국제저명학술지 이외의 국외전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 SCOPUS중 한국연구재단에서 불인정하는 SCOPUS Document Type 7종(Editorial, Letter, Note,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
	2.24	박사학위논문	

※ 유의사항

1. 연구실적 인정환산율
   - ○ 논문/특허 :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 2/(n+1), 공동저자 : 1/(n+1)로 하며, n은 참여 저자수로 총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 ○ 박사학위 논문은 200%로 인정함
   - ○ 저서 : 1/n로 하며, n은 참여 저자수로 총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2. 국내 및 국제 특허, 국제 일반학술지 평가점수는 합계 최대 40점까지 인정함.

▶ 예·체능 계열만 해당

구 분	항목번호	업 적 내 용		가중치	평가점수
예능계열 창작활동 (2.30)	2.31	국전 및 국전규모 추천, 초대작가 출품		10	
	2.32	국제전 출품		7	
	2.33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전 출품		5	
	2.3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회전 출품		3	
	2.35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5	
	2.36	국제 개인전 개최		20	
	2.37	국내 개인전 개최		10	
	2.38	국제공모전 수상	본 상	10	
			특/입선	5	
	2.39	국내공모전 수상	본 상	5	
			특/입선	3	
계					

구 분	항목번호	업 적 내 용	인정범위
예능계열 창작활동 (2.30)	2.31	국전 및 국전규모 추천, 초대작가 출품	▪ 대한민국미술대전(구. 국전) 및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구. 상공전) 등의 전시회에 출품 하는 경우로 추천작가 또는 초대작가(디자이너)로 출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에서 주최하는 경우에 한함 ▪ 대한민국 훈격 또는 대통령상 상훈의 구성
	2.32	국제전 출품	▪ 3개국 이상 국가의 작가가 참여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회원전 및 기획전 등의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로 추천작가 또는 초대작가(디자이너)로 출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 개최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국제규모의 예술, 공예 및 디자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에 한함 ▪ 2개국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의 경우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으로 인정함
	2.33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전 출품	▪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2.3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회전 출품	▪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2.35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 회원전 및 기획전에 출품하는 경우로 추천작가 또는 초대작가(디자이너)로 출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 예능계 법인단체(사단법인) 또는 공인단체의 주최로서 전국규모전 이상으로 아래 내용을 동시 충족하는 전시회 - 연혁 10년 이상 - 참여인원 80인 이상(전국규모) - 연1회이상 국내(국제) 회원전 또는 초대전 개최 ▪ 공인단체의 충족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카탈로그 등 증빙서류 첨부

구 분	항목번호	업 적 내 용	인정범위
예능계열 창작활동 (2.30)	2.36	국제 개인전 개최	▪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 개인 단독작품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탈로그), 신작 10점 이상
	2.37	국내 개인전 개최	▪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 개인 단독작품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탈로그), 신작 10점 이상
	2.38	국제공모전 수상	▪ 3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규모의 공모전(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비엔날레 등 포함). 2개국의 경우 국내공모전을 적용함 ▪ 본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을 포함함
	2.39	국내공모전 수상	▪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공예대전 및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과 이와 동등한 명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대전, 공모전 및 전시회 ▪ 본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을 포함함

【 별지 제 1-1호 서식 】

기 초 심 사 의 견 서

〔 대학 학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

	심사항목	평가점수	의 견 ("부" 및 "D"평가 항목에 대한 사항 기재)
기초심사 (모집분야 전공영역의 일치 여부)	전공적격 여부		
	학위 전공 일치 (학사20%, 석사30% 박사50% 적용)		
	교육 및 연구 경력 (현장실무경력 포함) 전공 일치		

종 합 의 견

※ ① 기초심사의 전공적격여부의 평가결과 "부"와 학위 전공일치, 교육 및 연구 경력 전공일치의 평가점수 "D"를 기재하고 평가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시기 바람.

② 기초심사(모집분야 전공영역의 일치여부)에 따른 종합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성 명 : (인)

【 별지 제2 호 서식 】 (개정 2012.11.5. 2014.12.15. 2019.8.14)

공개발표 심사 평가표

▣ 모집분야 : 대학 학과(전공) 분야

▣ 심사결과

접수번호		지원자성명		생년월일	
발표주제					

평가항목	배점					점 수
	A	B	C	D	E	
1. 발표방법(전달능력, 창의성 등)	10	8	6	4	2	
2. 발표내용(체계성, 충실성, 창의성, 학문적 우수성)	10	8	6	4	2	
3.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능력 등 전반적 강의능력	10	8	6	4	2	
4. 임용 후 교육 및 연구계획의 독창성·우수성·실현 가능성 등	10	8	6	4	2	
5. 품성, 인성, 발전가능성과 전공분야 기여가능성	10	8	6	4	2	
	합 계					

〔심사의견〕 ※ D, E 로 평가한 항목은 반드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심사의견을 반드시 기술하여야 하며, 배점대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함

2) 배점기준 - A : 탁월, B : 우수, C :보통 , D : 미흡, E : 매우 미흡

3) 공개발표 불참자는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20 . . .

심사위원 소속 _____ 성명 _____ 서명 _____

【 별지 제2-1호 서식 】 (개정 2012.11.5. 2014.12.15.)(삭제 2019.8.14.)

【 별지 제3호 서식 】 (개정 2019.8.14.)

면 접 심 사 표

응모전공(학과)	대학 학과(부)	지원 분야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 심사항목

구분	평 가			점수	비고
	A	B	C		
(1)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사명감					
(2) 대학 및 학과 발전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					
(3) 학생지도에 대한 자세					
(4)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5) 종합평가(인격, 품위 등)					
계					

※ 배점기준

A :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부합하는 경우 - 20점

B :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 15점

C : 해당 사항에 미흡한 경우 - 10점

년 월 일

면접심사위원 직위 : 성명 : (서명, 날인)

【별지 제4-1호 서식】(개정 2007.2.26, 2008.6.30., 2017.6.1., 2020. 03. 16)

승진 및 재임용 심사평정표

대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확인 (인)

구분 / 평정영역	평 정 항 목	실적 및 의견	평 정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2. 출근상황 및 근무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수 (5)	우 (4)	미 (3)	양 (2)	가 (1)
3. 지역거주 여부	원주지역 거주여부		수 (5)				가 (1)
4. 행사참여	교내 행사참여 및 활동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5.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	가. 교육관계법령 준수		수 (15)	우 (12)	미 (9)	양 (6)	가 (3)
	나.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6. 학교발전 기여도	가.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나.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다. 단과대학, 학과내의 활동 및 협동성						
합 계		평 정 총 계	점				

※ 위의 심사평정을 위하여 해당 학장에게 관련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요청하여 참고 할 수 있다

【별지 제4-2호 서식】 (개정 2007.2.26, 2008.6.30., 2017.6.1., 2020.03.16)

승진 및 재임용 심사 의견서

대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임용기간 . . 부터 . . 까지	학장 (인)

구분 / 영역	항 목	의 견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2. 행사참여	교내 행사참여 및 활동	
3.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	가. 교육관계법령 준수	
	나.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학교발전 기여도	가.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나.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다. 단과대학, 학과내의 활동 및 협동성	

【별지 제4-3호】 (신설 2018.05.17.) (개정, 2020.03.16)

일반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평정 기준표

구 분 / 평정영역	평 정 항 목	배점	심사평정 참고자료 및 배점기준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10 (5+5)	1. 강의평가 점수결과(심사일 현재 합산 평균) - 5 : 90점이상 - 4 : 80점이상 - 3 : 70점이상 - 2 : 60점이상 - 1 : 60점미만 2. 교원인사위원 배점 : 5점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10	1. 대학장 심사의견서, 추천서 등 참조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2. 출근상황 및 근무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5	1. 수업현황(학부, 대학원 포함) - 5 : 주4일 근무, 책임시수 완료 - 4 : 주3일 근무, 책임시수 완료 - 3 : 주3일 근무, 책임시수 주1시간이내 부족 - 2 : 주3일 이하 근무, 책임시수 주2시간 이상 부족
3. 지역거주 여부	원주지역 거주 여부	5	1.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 확인 - 5 : 원주지역(최근 1년 이상 지역거주 확인 시) - 1 : 원주지역 외(원주지역 1년 이내 거주자 포함)
4. 행사참여	교내 행사참여 및 활동	10	1. 전체교수회의, 교원 연수, 법정교육 참석 여부를 참고하여 교원인사위원 배점 : 10점
5.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	가. 교육관계법령 준수	15 (5+10)	1. 상벌현황(총장이상, 장관이상) - 5 : 포상 1회 이상, 징계 무 - 4 : 포상 무, 징계 무 - 3 : 경징계 1회 - 2 : 경징계 2회 이상 - 1 : 중징계 1회 이상 2. 수사상황은 - 벌금형은 경징계 1건으로, - 벌금형 초과는 중징계 1건으로 환산 3. 교원인사위원회 배점 : 10점
	나.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15	1. 가항의 기준에 의거 배점하고 2. 학장 심사의견서 참조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배점 : 15점

구 분 / 평정영역	평 정 항 목	배점	심사평정 참고자료 및 배점기준
6. 학교발전 기여도	가.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10	1. 본인제출 심사참고자료 2항 학교발전에 대한 노력 항목 참조 (매우우수 : 10, 우수 : 8, 보통 : 6, 미흡 : 4, 매우미흡 : 2) 2. 위원회 활동(당연직, 외부위원 제외) 참고
	나.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10 (5+5)	1. 학사업무준수사항(수업계획서, 성적, 휴·보강 자료 활용) - 5 : 수업, 성적, 휴·보강 등 완전 이행 - 4 : 합산횟수 1회 또는 성적정정인원 3명 이내 - 3 : 합산횟수 2회 또는 성적정정인원 5명 이내 - 2 : 합산회수 3회 또는 성적정정인원 7명 이내 - 1 : 합산횟수 4회 이상 또는 성적정정인원 7명 이상 ※ 합산횟수 : 미 이행한 학사업무준수사항 횟수를 합산 2. 본인제출 심사참고자료 교원인사위원회 배점 : 5점 -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다. 단과대학, 학과 내의 활동 및 협동성	10 (5+5)	1. 단과대학, 학과회의 참석 - 5 : 전체 90%이상 참석 - 4 : 전체 80%이상 참석 - 3 : 전체 70%이상 참석 - 2 : 전체 60%이상 참석 - 1 : 전체 60%미만 참석 2. 임용기간 내 단과대, 학과 회의 개최가 합산 평균 연2회가 안 되는 경우 기본 3점을 배점하고, 학과장 추천 의견, 학장심사의견, 심사참고자료를 참조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배점 : 5점 -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합 계		100	

※ 각 평정항목별 현황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사기준일 현재 자료로 평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0. 03. 16)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

대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위원장 확인 (인)

구분 / 평정영역	평 정 항 목	실적 및 의견	평정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2. 출근상황 및 근무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수 (5)	우 (4)	미 (3)	양 (2)	가 (1)
3. 지역거주 여부	원주지역 거주여부		수 (5)				가 (1)
4. 행사참여	교내 행사참여 및 활동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5.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	가. 교육관계법령 준수		수 (15)	우 (12)	미 (9)	양 (6)	가 (3)
	나.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6. 학교발전 기여도	가.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나.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다. 단과대학, 학과내의 활동 및 협동성						
합 계		평 정 총 계	점				

※ 위의 심사평정을 위하여 해당 학장에게 관련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요청하여 참고 할 수 있다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8.6.30, 2017.6.1)

승진, 정년보장임용 및 재임용 심사 참고자료

□ 교내 행사참여 및 학교발전 기여도

1. 교내 행사참여 및 활동	
2. 학교발전에 대한 노력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3. 단과대학 및 학과내의 활동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직 급 : **성 명 :** (인)

※ 1.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현직급 임용기간내의 사항만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07. 02. 26) (삭제 2008. 06. 30)
【 별지 제7-1호 서식 】(개정 2007. 02. 26) (삭제 2008. 06. 30)
【 별지 제7-2호 서식 】(개정 2007. 02. 26) (삭제 2008. 06. 30)
【 별지 제8-1호 서식 】(개정 2007. 02. 26) (삭제 2008. 06. 30)
【 별지 제8-2호 서식 】(개정 2007. 02. 26) (삭제 2008. 06. 30)